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17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05. 10. 김향숙 의원 등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05. 1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06. 02.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이유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자립 지원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바.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사.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18호
- 예고기간: 2023. 5. 12.(금) ~ 2023. 5. 17.(수) [5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없음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조례 제정의 취지(필요성)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조치 또는 보호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자립 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검토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준비청년’ 과 ‘아동복지시설’ 의 정의 규정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등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동복지시설: 고성군에 소재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자립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
- 실태조사 및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자립 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자립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 자립 지원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 자립 지원 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 규정
 -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3년 임기로 한 차례 연임 가능
 -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회의 소집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업무 위탁 근거 명시
-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목적이 달성되어 시설을 퇴소할 수밖에 없는 아동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정서적인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6. 2. 원안가결